

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 월 19 일

여 수 시 장 2023.09.19



여수시 조례 제1947호

붙임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 
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47호

## **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제51조와”를 “제52조까지와 제83조에”로 한다.
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지원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 칙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